의 안	게 2210 중
번 호	제3312호

#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 김계순 의원, 장윤순 의원,

김기남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12일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9월 15일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
#### 2. 제안이유

○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2조)

나.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다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(안 제4조~5조)

## 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수정안의 요지 :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문구 삭제(제1조)
- 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- 10. 주문사항 : 없음
- 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#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제3312호 제출년월일 2023. 09. 04. 제 출 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문구 삭제를 위하여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'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' 문구 삭제(안 제1조)

#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"을 "환경친화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환경친화적 자동차	제1조(목적)
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	
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	
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	
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시민</u>	환경친화적
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	
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	
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	
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